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수정 후		
341p	오타	수정 전	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			
			종합소득 과세표준		세 율	
			1,400만원 이하		과세표준의 6%	
			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	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	
		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	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		
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		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				
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	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				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	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				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	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				
10억원 초과		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				
		수정 후	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			
			종합소득 과세표준		세 율	
			1,400만원 이하		과세표준의 6%	
			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	84만원 + 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%	
		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	624만원 +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		
8,800만원 초과 ~ 1.5억원 이하		1,536만원 + 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%				
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	3,706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%				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	9,406만원 +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%				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	1억 7,406만원 +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%				
10억원 초과		3억 8,406만원 +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%				
		수정사유	숫자 오류			
347p [㉔ 공제 가능 의료비] 중	개념,공식-설명	수정 전	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			
		수정 후	㉔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			
		수정사유	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5 제1항 제7호 개정 [2024년 2월 29일]	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